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2023년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li> <li>○ 사업목적 :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매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li> <li>○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15. / 약 7개월</li> </ul>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li> <li>○ 지원규모 : 23개 브랜드 내외 (국고지원금 총 831,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편성 필수(현물 불인정), 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조정 가능</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의류</th> <th style="width: 33%;">잡화</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규모</td> <td>20개 × 39,000,000원</td> <td>3개 × 17,000,000원</td> </tr> <tr> <td>지원 내용</td> <td>시제품 40 스타일 이상</td> <td>시제품 40 스타일 이상</td> </tr> <tr> <td>자부담 금액 (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4,334,000원 이상</td> <td>1,889,000원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의류	잡화	지원 규모	20개 × 39,000,000원	3개 × 17,000,000원	지원 내용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자부담 금액 (총사업비의 10% 이상)	4,334,000원 이상	1,889,000원 이상
구분	의류	잡화												
지원 규모	20개 × 39,000,000원	3개 × 17,000,000원												
지원 내용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자부담 금액 (총사업비의 10% 이상)	4,334,000원 이상	1,889,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류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브랜드 제외</li> <li>* 잡화 : 가방, 슈즈에 한함 (아이웨어, 액세서리 등 제외)</li> <li>*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li> <li>* 협약일 이전에 제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즌 구분 없음, 브랜드별 연 1회 지원</li> <li>* 시제품 제작 완료 시기 : ~ 2023년 10월 말까지 (예정)</li> <li>*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포함) 제출</li> </ul> </li> </ul> </li> <li>○ 지원대상 (<b>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의류 또는 패션잡화 디자이너 브랜드</b> (국내 사업 등록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잡화는 가방과 슈즈만 지원(아이웨어, 액세서리 등 제외)하며, 특수목적 의상(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소재 관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li> </ul> </li> <li>- <b>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 기업인 브랜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li> </ul> </li> <li>- <b>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 2년(4시즌) 이상 참여한 브랜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참가의 경우, 해외 쇼룸에 참가 등록 및 업로드 하여 세일즈 한 경우로 제한하며, 자사 홈페이지 또는 자체 제작 영상물(룩북, 쇼룸 등)을 메일로만 배포한 경우는 시즌 참가 수주회로 인정하지 않음</li> </ul> </li> <li>- <b>국내·외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증빙 제출 가능한 브랜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청기관당 1개 제안서만 접수가능하며, &lt;2023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gt;과 중복 접수 불가</b></li> <li>- 신청일 기준 콘진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과제가 총 3개 미만이어야 함</li> <li>- 신청일 기준 본 사업(시제품 제작지원)을 3년 이상 지원받은 브랜드는 참여 불가</li> <li>-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 불가 [URL : <a href="#">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a>]</li> <li>- 공고문 內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사업자)</li> <li>- 기타사항 : 패션코드(2024S/S)* 참가 시 부스비 전액 면제 * 패션코드 2024S/S : '23년10월 개최 예정</li> </ul> </li> </ul> </li> </ul>														
<b>신청서 접수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기간 : 2023. 2. 23.(목) ~ 2023. 3. 15.(수) 11:00</li> <li>○ 접수기간 : <b>2023. 2. 23.(목) ~ 2023. 3. 15.(수) 11: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b>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b></li> </ul> </li> </ul>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e나라도움 업로드 용량 제한 주의(50Mbyte 이하),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필요**)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사업안내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 서류 업로드 후 '윈도우' 사용 환경에서도 파일이 잘 열리는지 필히 확인 바랍니다.  
(MAC OS에서 압축한 경우, 압축 해제 시 깨지는 일이 많으므로 윈도우 사용환경에서 확인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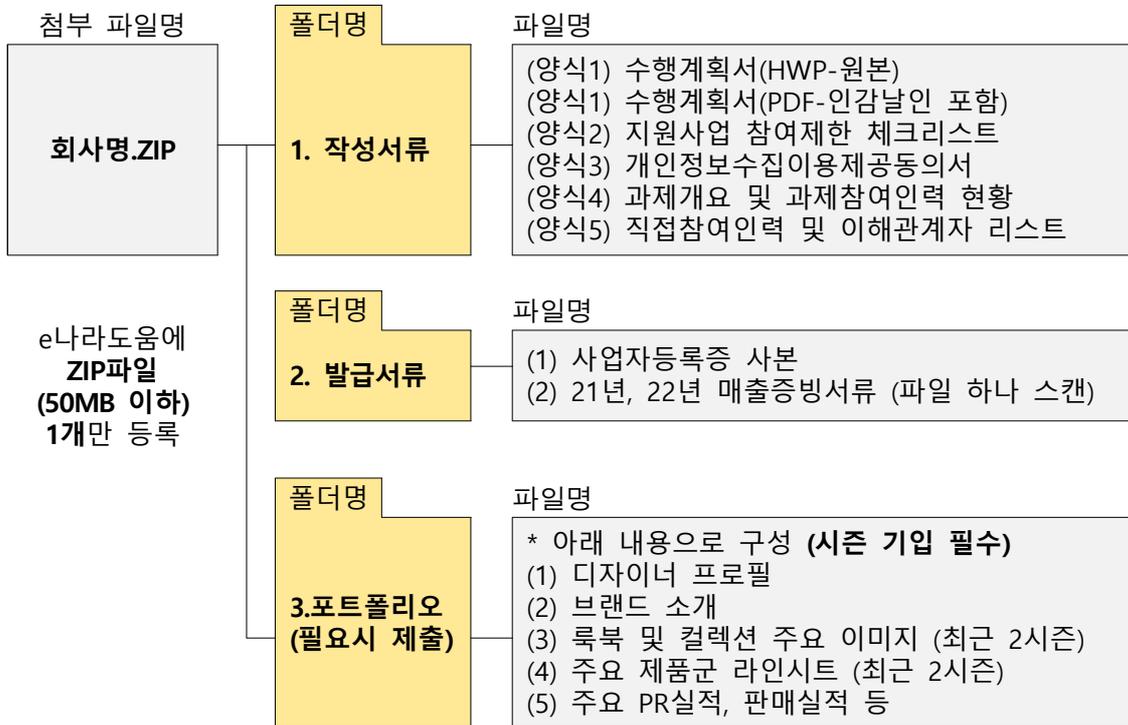
-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작성서류 (제공양식)	① 수행계획서	<b>인감 날인된 PDF파일과 HWP파일(원본)을 모두 제출</b>
	②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b>참여인력 서명 후 PDF로 제출</b>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과제개요 및 참여인력현황	엑셀 양식 그대로 제출 <b>※ 파일형식 변환 금지</b>
	⑤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외부발급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1~2022년 매출증빙서류 ( <b>연도별 구분 필요</b> ) ※ 양식1_수행계획서의 국내외 매출실적 확인자료 :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가능 서류	스캔하여 PDF로 제출
기타서류 (자유양식)	㉢ 포트폴리오(하단 순서 참조하여 작성) 1) 디자이너 프로필 2) 브랜드 소개 3) 룩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 (최근 2시즌) 4)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 (최근 2시즌) 5) 주요 PR실적, 판매실적 등	- <b>브랜드 경쟁력 판단을 위해 가급적 제출 요망</b> - 용량 내 동영상 제출 가능 - 시즌 기입 필수 - 용량 최소화하여 업로드 ( <b>이메일 등 별도 제출 불가</b> )

\*1차 서면평가 합격기관에 대해 ESG 지표 증빙 서류 추가 요청 예정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 (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 불가)
  - 수행계획서는 **인감 날인(!!필수!!) 후 스캔한 PDF파일과 원본 HWP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이외 서류는 **직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 불가하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과제명을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 , [ , ( ) 등)를 삽입하는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AC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업로드, 다운로드 과정에 파일 또는 파일명 깨짐에 주의 바랍니다. (**문서 업로드 후 윈도우 사용 환경에서 문서 다운로드 상태 필히 확인 요망**) 제출 마감 후에는 제출문서 보완이 불가하며,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폴더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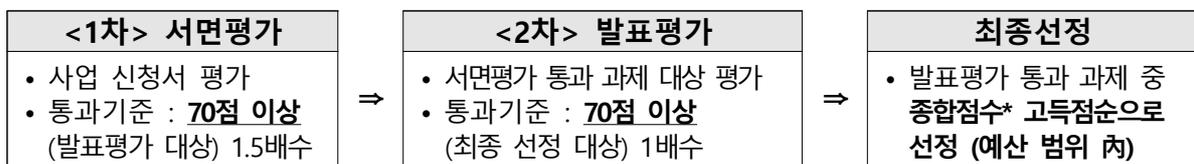


○ 기타사항

- 발표평가 진행 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서면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조사 제출서류 : ① 기업 개요표(온라인 작성), ② 정보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대표자 주소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등),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ESG지표 확인을 위해 해당 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SG지표 제출서류: 종사자(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위탁 등의 고용인력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지침/규약 등(해당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안내받은 후 2일 이내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1차 서면평가) 접수 브랜드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 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최종 선정대상의 1.5배수 내외)
  - \* 합격순위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할 시 동점자 모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 2차 발표평가 시 디자이너 필수 참석
  - \* 선정 절차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통해 확정 예정
  -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 순위자를 지원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관리체계(일정) 마련 여부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10
	기관전문성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적정성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및 분야별(디자인, 해외영업, 홍보 등) 전문성 보유 여부	20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자부담 포함) 및 사업목적 부합여부	10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5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온오프라인 활용 등 종합 판단)	15
과제내용 (20점)	독창성	제품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20
	경쟁력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합 계			100
패션코드 참여 가점 (2점)		패션코드 2023 S/S, F/W 수주회 참가 횟수 (1회당 1점, 최대 2점)	2

▶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수행기관 (10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신용등급</td> <td>BBB이상</td> <td>BB~B</td> <td>CCC</td> <td>CC이하</td> </tr> <tr> <td>배점</td> <td>5점</td> <td>3점</td> <td>1점</td> <td>0점</td> </tr> </table> ※ 신용평가사 의뢰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반영	신용등급	BBB이상	BB~B	CCC	CC이하	배점	5점	3점	1점	0점	5
	신용등급	BBB이상	BB~B	CCC	CC이하								
배점	5점	3점	1점	0점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5										
과제내용 (40점)	기획 완성도	목표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등	20										
	차별성	제품의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참신성과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20										
	경쟁력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기대성과 (44점)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 규모	30										
	글로벌 진출성과	기대되는 해외진출(해외판매, 해외컬렉션 참가 등) 실적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4										
ESG (6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점 ※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을 시 0점, 계획이 있을 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판단하여 채점	2										
	지역기업	주관기관의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3										
	윤리·인권 (종사자 권익보호)	고용인력 권익 보호 규약(정규, 비정규, 프리랜서, 위탁)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정상 제출 : 1점 ※ 일부제출/미제출 : 0점 ※ (서면 합격 시) 사내 약관, 규정, 지침 등 증빙 추가 제출	1										
합 계			100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지원)에서 **최대 3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3년 과제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021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간접 패션지원사업은 동일 연도 내 최대 3개 사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초과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제작지원 사업은 <2023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구분	사업명	지원기간	해당시점	비고
직접지원	2023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23.04~'23.11	-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시제품/지속가능)
직접지원	2023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23.04~'23.11	-	
직접지원	2023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23.04~'23.11	-	부문간 중복 신청 불가 (온라인콘텐츠/패션문화전시)
간접지원	2023 컨셉코리아 뉴욕	'23.07~'24.04	24S/S, 24F/W	
간접지원	2023 창의브랜드 수출지원공간(터셀렉트)	'23.01~'23.12	23F/W, 24S/S	기존 입점 브랜드는 금년선정 1회로 간주
간접지원	2023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23.06~'23.12	-	
간접지원	2023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23.05~'24.05	24S/S 24F/W	

위 7개 사업에서 최대 3개 사업까지 선정 가능

<b>문의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문의 : 윤서현 대리 (☎061-900-6453, yoon@kocca.kr)</li> <li>○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매뉴얼(<a href="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a>)</li> <li>- 동영상 매뉴얼(<a href="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a>)</li> </ul> </li> </ul>
<b>콘텐츠금융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광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li> <li>○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li> <li>- 금융상품별 공고(<a href="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a href="https://www.kocca.kr">https://www.kocca.kr</a>) &gt; 알림마당 &gt; 금융지원</li> </ul> </li> </ul> </li> <li>※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li> </ul>
<b>기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li> <li>○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li> </ul> </li> <li>○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li> <l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p> <p>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p> <p>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li> <li>-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li> <li>* 단, 1인 보조사업자일화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li> <li>*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li> </ul> </li> <li>○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 현황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 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 지원업체가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 반납 요청 및 기타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 해약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납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